



부 산 고 등 법 원

창 원 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 (창원)2024누111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원고, 피항소인 A 주식회사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○○ 담당변호사 성○○
피고, 항소인 1. ○○시장
2. ○○시 ○○구청장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○○
제 1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4. 8. 22. 선고 2023구합12338 판결
변 론 종 결 2025. 6. 13.
판 결 선 고 2025. 8. 13.

주 문

1.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[청구취지]

피고 ○○시장이 2022. 9. 8. 원고에게 한 취득세 1,022,950원(가산세 포함), 농어촌



특별세 87,460원(가산세 포함)의 부과처분 및 피고 ○○시 ○○구청장이 2022. 9. 8. 원고에게 한 취득세 1,022,941,440원(가산세 포함), 농어촌특별세 87,460,610원(가산세 포함)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

[항소취지]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'원고는 2020. 2. 26.자 명의개서를 통해 D, F 주식회사가 보유하는 주식회사 B의 주식 2,163,500주의 실질적인 권리자가 되어 위 법인을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원고에게 취득세, 농어촌특별세 등을 부과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'는 것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. 그리고 피고가 제1심에 제출한 증거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까지 면밀히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약어를 포함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, 2행의 "이 사건 주식에 관련된 경제적 이익은 여전히 D 등에게 귀속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."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.

『또한, 위 계약서 전문에서는 그 양도담보 계약의 체결 목적에 관하여 '원고는 D 등이 임의적이거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결권 행사를 함에 따라 사



업에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, 이 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 상환을 담보할 목적'이라고 명시하여 원고의 대출원리금 상환 담보를 위해 양도담보를 설정하였다는 점을 명시하였는바, 비록 원고가 명의개서를 통해 형식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더라도 처음부터 그러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이 사건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할 목적은 없었다고 보인다.』

○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2 내지 14행의 "담보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제한하고자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."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.

『실제로 이 사건 합의 전문에서도 '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시행 및 책임 주체는 D 등이며, 원고는 대주로서의 권리나 이 사건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고자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한다'라고 하여 원고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 그 운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였다고 명시하였다.』

○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0, 21행의 "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나 사내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 등에 관여한 사실은 없어 보인다."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.

『한편,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 체결 직후 K이 이 사건 법인의 (각자)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, 위 K이 M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것에 비추어 원고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나, 위 K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원고의 양도담보권이 해지되어 다시



D 등에게 반환되고 새로운 대주인 H 주식회사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이후에도 여전히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점, K은 위 M 주식회사 이외의 많은 회사의 임원으로도 재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으로 원고와 특수관계가 있었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, 실제로 K이 이 사건 법인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여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위와 같은 피고들의 주장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.』

○ 제1심판결문 제7면 제2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.

『아) 결국, 일부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 과점주주가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·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므로, 과점주주인 원고에게 요구되는 것은 '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이 사건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지위'인바, 앞서 살펴 본 원고의 설립 목적과 이 사건 법인과의 관계, 이 사건 주식양도담보계약서 및 이 사건 합의의 체결 목적과 그 규정 내용, D의 회계처리 방식,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대한 원고의 실제 경영 관여 여부, 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 증명책임이 있다(대법원 2007. 2. 22.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)는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,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가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.』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되어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

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5-08-27

같이하여 정당하므로,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허○○

판사 최○○

판사 서○○